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791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헌승·조경태·임이자

박덕흠 · 성일종 · 김 건

송석준 · 서범수 · 박성훈

곽규택 • 강명구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 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 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 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 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 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 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 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 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

- 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 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8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5. 제79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예우를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6.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훈등 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 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 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 | 현 행 | 개 정 안 |
|---|-----|---|
|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별 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 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 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 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 |

<신 설>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훈</u>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 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 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0조의 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 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다.

제80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2조의2(벌칙) - | |
|--------------|--|
|--------------|--|

-----.

1.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 |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 |
|--------------------|-----------------------|
| | 하거나 양도 • 대여를 받은 사 |
| | 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 |
| | 를 사용한 사람 |
| <u><신 설></u> |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
| | 을 사용하거나 제8조제2항 및 |
| | 제3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 |
| |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
| |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 |
| | 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 |
| | 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 |
| | 80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 |
| | 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
| | 제외한다. |
| 1.・2. (생 략) |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
| <u> </u> | 같음) |
| <신 설> | 5. 제79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 |
| | 간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
| |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 |
| | 지된 예우를 받기 위하여 국 |
| | 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
| <신 설> | 6.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
| <u> </u> |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등 |
| | 0 16 / 16 0 6 1/146 0 |

록증을 사용한 사람